

제151회(임시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면
2.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면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 심사보고서	3면
4.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면
5.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7면
6.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8면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 6. 15.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6월 3일 ·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6월 8일 원안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5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2005. 6. 15)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박 종 인)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8603호, 2004. 12. 18)이 공포·시행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우리구 직원 총 정원내에서 인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현 정원 변동 없이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구의회사무국 정원 24명에서 26명으로 2명 보강하고, 집행기관 정원 1,235명에서 2명을 감축하여 1,233명으로 조정 (안 제2조)
- 「서울특별시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규정된 구 본청·보건소·동 및 의회사무국의 직급별 정원 규정을 신설 (안 제3조)
-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 (안 제4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박 성 열) —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4. 質疑 및 答辯 要旨 (생 략)

5. 討 論 要 旨 (없 음)

6. 修 正 案 의 要 旨 (없 음)

7.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 6. 15.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6월 3일 ·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6월 8일 원안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5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2005. 6. 15)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박 종 인)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시행(2005. 3. 18)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중 관련 조항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2)
- 2005.7.1일부터 주5일제 근무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축소(1~2일)함 (안 제18조)
-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 지정(안 제30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박 성 열) —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4. 質疑 및 答辯 要旨 (생 략)

5. 討 論 要 旨 (없 음)

6. 修 正 案 의 要 旨 (없 음)